

광주지방법원 2021. 7. 21 선고 2020나6597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1. 7. 21 선고 2020나65974 판결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. 10. 8 선고 2020가소931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신영

변론종결 2021. 6. 16.

판결선고 2021. 7. 21.

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. 10. 8. 선고 2020가소931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,32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11. 1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정영하, 판사 황진희, 판사 박정운